



# 서울 행정 법 원

## 제 1 3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731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7.

판 결 선 고 2019. 5. 30.

1)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를 송달장소로 보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사무소를 주소로 기재한다.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7-134 호 파면 처분 취소(감경)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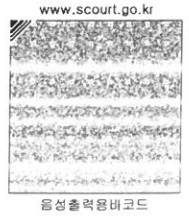
가. 원고는 2007. 9. 1. 참가인 소속 [REDACTED] 고등학교 상업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9. 1. 국어 교사로 담당 과목이 변경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6. 12. 14.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갑 제2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 징계위원회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sup>2)</sup>를 들어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다(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바,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다. 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다음 표 기재 개별 징계사유의 소제목 옆에 기재된 괄호 안 '제○-○ 징계사유'라는 기재를 사용하기로 한다)(갑 제3호증).

2)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였다.







다. 수행평가 작품감상문 성적 조작(제 I -2-다 징계사유)

원고는 서○○ 학생이 별주부전 내용을 기술하였지만 백지 제출에 해당하는 2점을, 염○○ 학생은 '느낀 게 없다' 라고 기재하였음에도 10점을, 염○○ 학생의 답지에는 점수 표시가 없는데 성적 처리는 10점으로 입력되었으며(점수를 부여하고 나중에 작품감상문을 제출한 것임), 나○○은 줄거리만 있는데도 8점을, 박○○ 학생과 강○○ 학생은 작품 감상문의 내용이 '호질' 을 읽고 그 느낀 점이 비슷한데도 강○○ 학생은 10점, 박○○ 학생은 4점을, 함○○ 학생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작품감상문을 꼼꼼하게 채점하여 6점을, 이○○ 학생과 최○○ 학생은 내용을 검토한 흔적도 없이 10점을 부여하였다.

라. 2016학년도 1학년 2반, 3반 1학기 국어 I 수행평가 항목 중 기능(화법)의 실태 (제 I -2-라 징계사유)

학생들은 원고에 대해 '수행평가를 볼 때 용의복장이 불량하다는 핑계로 8점을 주었고, 용의복장이나 준비도 안한 나에게 10점을 주었다.', '나는 말하기 수행평가 때 산만하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말도 더듬었지만 10점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은 용의복장 때문에 8점을 받았다고 했다.', '수행평가 점수를 주실 때 이쁘다 하는 애들은 만점을 주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점수를 낮게 준다.', '수행평가 준비를 안 한 아이 중 ○○○, ○○○, ○○○은 10점을 받고, 준비를 한 ○○○은 머리와 복장이 불량하다고 8점을 줬다'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II. 학생에 대한 '성적 회롱' (제 II 징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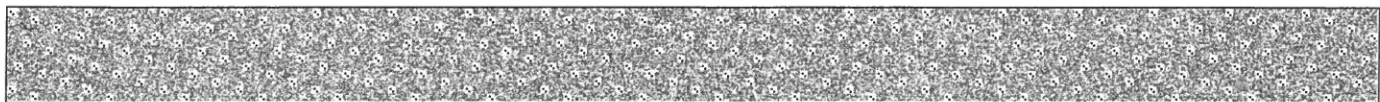
1.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보관 및 남녀 학생들에게 노출(제 II -1 징계사유)

2016. 11. 14. 학생들이 '친구사랑의 날' 행사로 인하여 UCC를 만들기 위해 담임인 원고가 퇴근한 이후 전화 통화를 하고 원고의 컴퓨터를 빌려 작업을 하다가 업무용 컴퓨터 안에 '포르노' 동영상 2개가 있어 UCC 작업을 하던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고 수치스럽게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016. 12. 14. 원고가 직위해제된 후 노트북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여 원주 모 업체에 하드디스크 복구를 의뢰하여 학생들이 보았다는 '포르노' 영상을 복구하다가 같은 형식의 '00029.AVI'가 다량으로 발견하게 되었음(교복을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과 기타 다수의 포르노, 19금 영화 등 다수가 추출됨).

2.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제 II -2 징계사유)

원고는 2016학년도 2학년 1반 문학수업 중 '나는 와이프랑 같이 야동을 본다.', 2016학년도 1학년 2반 국어 수업 중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 '자기 내는 똥똥해서 싫은데 너네는 이빠서 좋다.', '남자로서 아내가 한 명인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 2016학년도 2학년 1반 문학수업 중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외설적 언어(애무, 키스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 3. 음란한 시선과 표정 처리(제Ⅱ-3 징계사유)

원고는 2016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시험 기간 중 시험 감독으로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참가 쪽 여학생 앞으로 가더니 가슴을 뚫어지게 보는 성적 희롱을 하는 것을 본 학생이 있고, 2016년 5월 춘계 체육대회 때 운동장에서 한 여교사의 엉덩이를 보고 웃는 것을 3명의 학생이 목격하였다.

## Ⅲ. 학습권 침해(제Ⅲ 징계사유)

### 1. 국어 수업 시간은 학생들 자유시간(제Ⅲ-1 징계사유)

원고는 1학년 2반, 3반 국어수업시 10~15분 정도 칠판에 내용을 판서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을 주어, 학생들은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고 원고 본인은 교탁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방치하였다.

### 2. 수업 시간을 농담과 잔소리로 때움(제Ⅲ-2 징계사유)

원고는 2016학년도 2학년 1반 담임으로 1교시 자신의 수업인 문학 시간에 조례를 한다고 하면서 수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잔소리와 농담으로 1시간을 채우고 나가며, 종례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 3. 체험활동(제주도 수학여행)시 담임역할 포기(제Ⅲ-3 징계사유)

원고는 2016. 9. 2학년 1반 담임으로 수학여행도 수업의 연장인데 3일 동안 반을 인솔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때에는 혼자 버스로 가고, 비행기 표도 다른 교사가 나누어 주었으며, 자신의 할 일만 하여 2학년 1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느꼈다.

## Ⅳ. 학생 회유와 겁박(제Ⅳ 징계사유)

### 1. 학생들을 겁박함(제Ⅳ-1 징계사유)

원고는 2016학년도에 2학년 1반 담임이라는 이유로 밤늦게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선생을 가르치려 드느냐'고 화를 내고, 학생들이 평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겁박하였다.

### 2. 학생들을 회유함(제Ⅳ-2 징계사유)

원고는 2016학년도 국어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회유와 겁박을 하면서 써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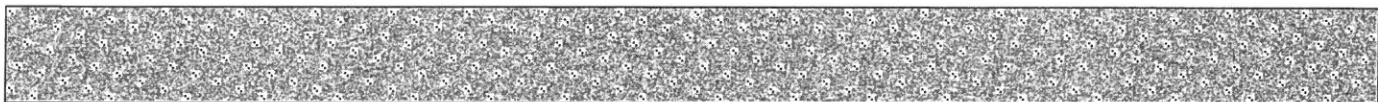
4. 일·숙직 교대 시간 위반(제 V-4 징계사유)

숙직전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6년 동안 한 번도 정시에 일·숙직 교대를 해 본 적이 없으며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늦었다' 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2017-134호)(을나 제6호증).

라. 피고는 2017. 4. 19. "① 제 I-1-가 징계사유 중 '객관식 일부 문항은 방과 후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만 문제와 답을 알려줌' 부분, ② 제 I-2-나 징계사유 중 '2학년 1반 1학기 수행평가 항목 중 지식(논술형)에서 채점의 기준대로 채점하지 않고 답지가 없는데도 8점, 10점을 부여한 것'을 제외한 부분, ③ 제 I-2-다 징계사유, ④ 제 I-2-라 징계사유, ⑤ 제 II-1 징계사유 중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부분, ⑥ 제 II-2 징계사유 중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부분,<sup>3)</sup> ⑦ 제 II-3 징계사유, ⑧ 제 IV-1 징계사유, ⑨ 제 IV-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⑩ 제 III-3 징계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어떤 담임 역할을 포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⑪ 제 V-4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일직시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일직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에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3) 이 부분이 "2016학년도 1학년 2반 국어 수업 중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 '자기 아내는 똥똥해서 싫은데 너네는 이빠서 좋다.', '남자로서 아내가 한 명인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하였으며" 부분 전체를 가리키는지, '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발언만을 가리키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① 위 발언 전체가 징계의결요구서(을가 제11호증 제2쪽)의 징계사유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에서 제 II-2-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는 와이프랑 같이 야동을 본다'는 발언에 한정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 제16, 17쪽)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전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명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2. 나. 1)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징계사유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의결요구사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계사  
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다. 나아가 만약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인정  
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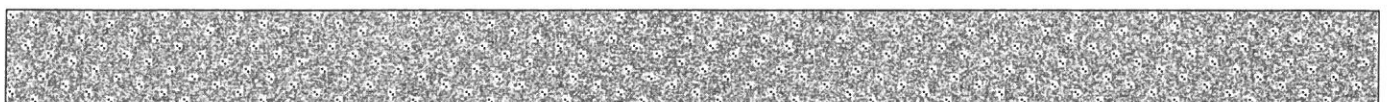
###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1) 제 I -1 징계사유(징계사유 인정)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양동고등학교 학생 다수는 취업에 관심이 많을 뿐 수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서술형 문제의 답을 작성하기 어렵기에,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서술형 문제의 답  
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교장은 2015. 5.경 원고에게 직접 '철판에 문제와 모범답안을  
판서하라'고 지도를 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철판에 서술형 문제와 정답을 판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조직 내에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은 징계형평성에 반한다.

또한, 원고가 실제 낸 문제의 내용은 매우 긴 반면, 판서한 내용은 매우 간략  
하기에, 실제 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야 쓸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판서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여야만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을가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원고가 판서한 내용과 실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별도의 학습 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 표 기재 내용은 원고가 미리 알려준 서술형 문제와 답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원고가 판서한 내용	실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
① '패관문학'이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산문문학을 말한다.	① 한국의 서사 문학 중 고려시대 서사문학으로서 패관문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② '전'이란?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후 교훈을 이끌어내는 문학 양식을 의미한다.	② 한국의 서사 문학 중 고려시대의 서사문학의 '전'이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③ '가전'이란? '전'의 형식을 빌려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의성을 가미한 문학 양식을 말한다.	③ 한국의 서사문학 중 고려시대의 서사문학의 '가전'이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④ 조선후기 소설의 근원설화적 관점? 근원설화에서 시작하여 판소리를 거쳐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④ 조선시대 서사문학에서 조선후기 소설의 특징을 근원설화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⑤ 최초의 한문소설의 특징? 김시습의 '금오신화'이며, 이 소설은 설화문학의 오랜 전통을 최초로 창작된 한문소설이다.	⑤ 조선 시대의 서사문학에서 조선전기의 최초 한문소설을 언급하고 그 작품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시오.
⑥ 개화기소설의 의미? 계몽의식을 고취하는 신소설이 나오며 구습타파, 자유사상, 신교육예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한국의 개화기, 일제강점기의 서사문학은 한국 서사문학의 현대소설로 전환되는 주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중 '개화기 소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 소설인지 서술하시오.

원고가 판서한 내용	실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
① 공손성의 원리: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① 대화의 원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② 관용의 격률: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하며 상대가 너그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규칙이다.	② 공손성의 원리에서 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는 '관용의 격률'이라는 규칙이 있다. 이 '관용의 격률'에 대하여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③ 자기자신을 낮추는 표현: "천만예요", "별말씀을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등이 있다.	③ 공손성의 원리 규칙에서 '겸손하게 말하기'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 두 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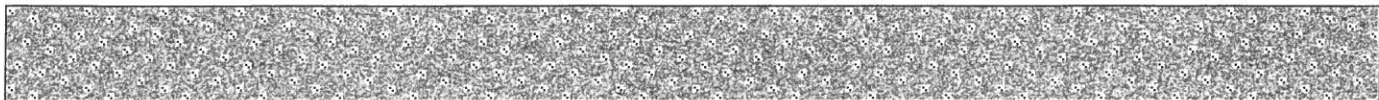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수행평가 영역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문학평가계획'에서 '수업에 대한 참여도, 수행평가자료 작성에 대한 열의성에 따라 가산점과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말하기 평가의 영역별 채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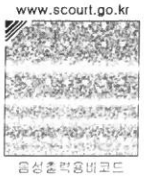
영역	영역별 채점기준	
기능 (화법)	A(10)	주제가 분명하고 적극적이며 몸가짐이 매우 자연스러워 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함. 듣기 자세가 좋고 타인의 생각을 잘 감상함.
	B(8)	말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분명하나 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빈약함. 듣기 태도가 양호함.
	C(6)	몸짓이나 표정 등이 다소 어색하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내용은 양호함. 듣기 태도는 양호하나 관심을 갖지 않음.
	D(4)	몸짓이나 표정 등이 어색할뿐더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혼란스러움. 듣기 태도가 양호하지 못함.
	E(2)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워 상대가 알아듣기가 다소 힘들. 듣기 태도가 불량하여 발표 진행을 방해함.

나아가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말하기 평가에 참여하였던 학생들 중 일부는 '4점'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말하기 평가에서 부여할 수 있는 평점은 총 5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바, 평가를 중도 포기하고 재시험을 보기로 한 학생에게 재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8점을 부여한 것은 문학평가계획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말하기 평가에 참여했던 학생조차 4점을 받았다면, 말하기 평가를 중도 포기한 학생은 적어도 그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야 마땅한데, 단순히 평소 수업태도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2단계를 뛰어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① 제 I-2-나 징계사유, ② 제 II-2 징계사유 중 '2016학년도 2학년 1반 문학수업 중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외설적 언어(애무, 키스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는 부분, ③ 제 V-1 징계사유, ④ 제 V-2 징계사유 중 '2016년 문학 수업시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선동가라고 하였다'는 부분, ⑤ 제 V-3-다 징계사유(징계사유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의결요구사유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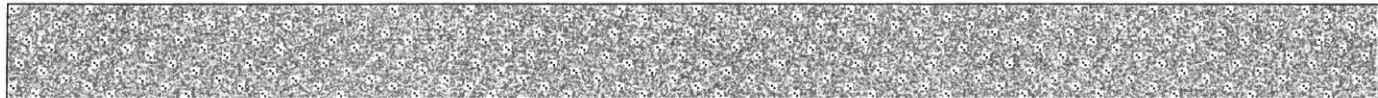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





다10091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17, 18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은 2016. 12. 14.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 첨부서류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사유서'가 있었다(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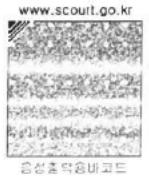
②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제V-1 징계사유와 제V-2 징계사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갑 제2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2).

③ '징계의결요구서'는 원고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 '양동고등학교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와 같은 양식이 갖추어져 "징계의결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이고, 참가인의 직인이 찍혀져 있다. 이에 반하여 '징계사유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징계사유가 줄글로 나열된 문서이다(을가 제11호증).

④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2)를 수령하였으나, 위 ③항의 '징계사유서'는 수령한 바 없다(갑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참가인이 징계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도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갑 제17, 18호증, 을나 제4호증).

⑤ [redacted] 고등학교 교장은 2016. 11. 30.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는데, 그 첨부서류로 '징계사유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을나 제2호증).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사유서'의 양식 및 내용, 원고에게 교부된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의 내용, [redacted]고등학교 교장이 교원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면서 보낸 첨부서류의 명칭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서'는 '징계의결요구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서이거나, [redacted]고등학교 교장이 참가인에게 교원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면서 보낸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징계의결요구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의결요구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징계사유서'를 수령한 적이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에 임박하여 원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문답서(을가 제14호증)의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는가, 원고가 '교원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수령하기 전부터 각종 징계사유에 관한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II-1 징계사유(징계사유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용 노트북을 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빌려주었고, 학생들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을 발견하였다. 위 음란물은 원고가 일부러 저장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일괄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미





처 인지하지 못하고 저장한 것이었다. 원고가 음란물을 일부러 학생들에게 노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학생들이 원고의 사적인 부분까지 몰래 훑쳐보다가 음란물을 발견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원고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음란물을 보관하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학생들에게 빌려주었다. 학생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파일을 열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인 원고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II-2 징계사유 중 2016학년도 2학년 1반 문학수업 중 '나는 와이프랑 같이 야동을 본다'고 말한 부분(징계사유 인정)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수업시간 중 "나는 와이프랑 같이 야동을 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학생이 "선생님도 야동 보나요?"라는 질문을 하기에 대답을 한 것일 뿐이다. 당시 원고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없었는바, 이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해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수준의 발언이 아니다.

#### 나) 판단

학생이 교사인 원고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에 화답하여 부적절한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질문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학생의 교육에 더욱 적합한 대답을 하여야 했다. 대답 당시 원고에게 배우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원고의 대답이 질문을 한 학생 이외의 다른 학생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아니할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가 제1, 2호증).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6) 제Ⅲ-1, 2 징계사유(징계사유 인정)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등학교 학생 다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만한 시간이 되면 가끔 수업 외의 이야기를 통해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수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거나 수업 장소를 이탈하거나 수업을 자습으로 대체한 사실은 없다.

조례 이후 이루어진 수업시간의 순수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고려하여 조례시간을 20분 뒤로 늦추기로 학생들과 합의를 하였고, 학생들이 모자라는 수업의 보강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형편상 수업시간을 채우기는 힘들고, 다른 교사들도 모두 같은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다.

##### 나) 판단

(1)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8호증, 증인 김수정, 강원상의 각 서면증언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수업시간에 자주 늦게 들어왔으며, 수업시간을 수업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채우거나, 임의로 자유시간을 부여하여 수업을 정상적으



로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업을 게을리하고 학생을 방치하였던 사실, 종례를 학생에게 위임한 일이 잦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대로 학생들이 평소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지장도 되지 아니한다.

(2) 학생 일부의 등교시간을 고려하여 정해진 조례시간을 늦추고, 학생들이 보강을 기피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순수 수업시간이 적은 사실에 대한 합리성 있는 변명이라 할 수 없다.

(3) 원고는, 다른 교사들도 수업시간을 채워서 수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면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설문지(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다른 교사들이 원고처럼 학생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제V-2 징계사유 중 2016년 문학 수업시간에 세월호와 관련하여 진실규명과 같은 책들은 상업적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이라고 하고,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2016년 문학 수업시간에 '박근혜 퇴진 운동'과 관련해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신 중에 상 병신들'이라고 한 부분(징계사유 인정)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세월호 관련 서적과 관련하여, 원고는 '독서기록장을 쓸 때에는 현재의 민감한



정치상황을 대변하는 책보다는 순수문학 서적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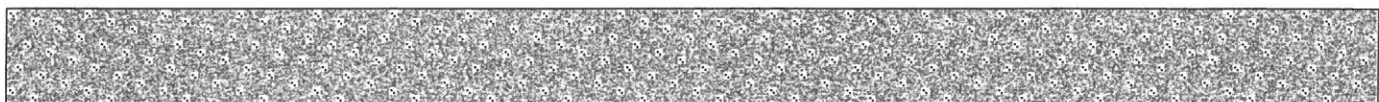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급적 광화문 시위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원고는 '나도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다. 나의 생각이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줄 알고 학생 본연의 학업에 소홀히 하는 나는 상병신이었다. 너희들은 그런 곳에 가는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 정도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수업시간 중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원고의 발언을 정치적 발언으로 느껴 거북하다고 느꼈다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병신'이라고 비하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다 쓸데없고 한심한 짓'으로 비하하면서 '너희들은 선동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세월호 진실 규명 관련 서적의 출판은 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 '상업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하하는 말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징계사유처분서에 이 부분 징계사유의 소제목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목으로 '품위 손상 및 근무태만'을 기재하였는바 (갑 제3호증), 발언의 일부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제목을 설정할 것으로 보일 뿐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표현방식이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에는 모자람이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제 V-3-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다른 교사에게 평가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료교원평가가 감정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감정을 갖지 말고 평가해달라는 의미로 부탁을 하였을 뿐이다. 다른 교사들이 위 부탁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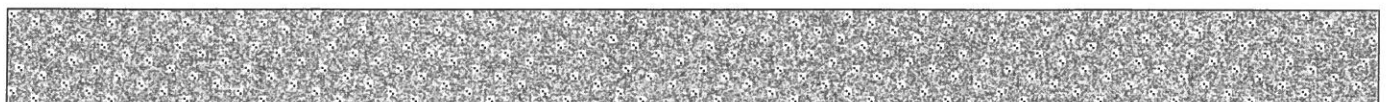
을가 제12호증의 7, 8,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교원평가기간 동안 동료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를 잘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농담조로 이야기를 한 수준이 아니라, 교원평가기간 도중에 일부러 전화를 걸어 좋은 평가를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 평가를 부탁받은 교사들이 평가점수 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9) 제 V-3-나 징계사유(징계사유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업교환 업무담당자인데, 병가로 인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한 교사를





위해 수업을 교환하여 줄 교사를 찾아 수업교환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기에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의견 충돌로 인해 상호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와 해당 교사는 서로 사과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 나) 판단

갑 제10호증, 을가 제12호증의 4, 5,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수업교환 업무담당자였는데 급작스럽게 한 교사가 조퇴를 함에 따라 다른 수업과 시간대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다른 교사에게 사전 합의 없이 수업교환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뒤늦게 수업을 교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교사가 '자신의 수업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수업이라 수업시간을 뒤로 미루게 되면 식재료가 상하게 되어 모두 버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수업교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③ 이에 화가 난 원고는 그 교사와 교무실에서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동료간 의견 충돌이나 분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교사의 수업교환 거절 사유가 타당성 있어 보임에도 다른 교사가 있는 교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고, 원고는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1) 관련 법리

가)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



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 13, 1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비위 정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학생들에게 서술형 문제의 답을 미리 알려준 부분(제 I-1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 시험에 출제할 서술형 문제 6개 전부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㉔ 시험에 출제할 서술형 문제 6개 외에 다른 문제 및 답을 섞어서 알려줌으로써 난이도를 올린다거나, 문제만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 공부하게 하는 방식조차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문제와 답을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그저 외워 쓰기만 하면 모두 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알려준 서술형 문제는 1개당 배점이 6점이어서,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36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었던 것인바, 이는 학사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작지 않다. 나아가 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평가에 참여했던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제 I-2-가 징계사유)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의 불공정함 및 차별대우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까지 고려한다면, 원고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수업을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함으로써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고(제 III-1, 2 징계사유), 업무용 노트북에 음란물을 보관하거나(제 II-1 징계사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제 II-2 징계사유 중 일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제 V-2 징계사유 중 일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였다.

④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좋은 평정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교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제 V-3-가, 나 징계사유).

⑤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을 참고해 보더라도, 제 I-1 징계사유, 제 III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





양식에 작성자 이름만 바꿔 제출된 것이고, 자필로 기재된 일부 탄원서의 내용도 위 인쇄된 탄원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고, 탄원서 용지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설명한 채 탄원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하였다. 엄한 징계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가 제13호증). 원고가 가르친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의 학부모 다수도 원고의 평소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피력하고 있다(을가 제1, 2, 15호증).

⑧ 원고에 대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리한 내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과목의 서술형 평가 방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시험 힌트를 주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등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이는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상으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 라.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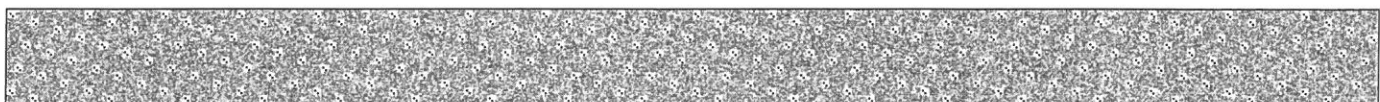
이 사건 결정에는,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부 징계사유를 포함시킨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파면이 정당하다고 본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u>장 낙 원</u>	
	판사	박중휘	<u>박 중 휘</u>	
	판사	박종원	<u>박 종 원</u>	





# 정본입니다.

2019. 6. 3.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나현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